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체육단체에 조사개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, 통보를 받은 체육단체는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함(안 제18조의5제7항부터 제9항까지).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·단체의 장은 외부 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, 징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(안 제18조의8제2항 및 제18조의9제13항 신설).
-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한 조치요구·보완요구 또는 재조치요구를 미이행하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(안 제18조의9제2항·제3항 및 제55조제1항제1호 신설).

II. 검토의견

안 제55조제1항제1호는 체육단체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한 징계 요구·권고·시정명령 등의 조치요구(제18조의9제2항 후단), 그 처리 결과에 대한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(제18조의9제3항 후단)를 미이행한

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.¹⁾

그런데 먼저, 현행법상 체육단체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한 조치 요구 및 보완요구·재조치요구(이하 조치요구등)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²⁾ 조치요구등을 하는 경우와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른 특수법인인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조치요구등을 하는 경우로 구분됨.

스포츠윤리센터가 직접 조치요구등을 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이 준용³⁾ 되는바, 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“조치요구등을 미이행한 경우”에 스포츠 윤리센터가 직접 요구한 조치요구등을 미이행한 경우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됨.

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위임이 없으면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·징수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, 체육단체의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조치요구 주체 간 징계정도, 위법·부당성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

1) 「국민체육진흥법」

제18조의9(고발 및 징계요구 등) ① (생략)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·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권고, 시정명령 등(이하 “조치요구”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치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, 조치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(이하 “보완요구”라 한다)하거나 다시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(이하 “재조치요구”라 한다).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,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~ ⑬ (생략)

2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조치요구를 하는 경우도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·검사에 따라 조치요구를 하는 경우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조치요구를 하는 경우로 구분됨.

3) 「국민체육진흥법」

제18조의9(고발 및 징계요구 등) ① ~ ③ (생략)

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조치요구,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,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단체에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제3항에 따른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 및 재징계요구를 직접 할 수 있고, 이 경우 제2항 후단 및 단서, 제3항 후단 및 단서, 제6항을 준용하며, “문화체육관광부장관”은 “스포츠윤리센터”로 본다.

⑥ ~ ⑬ (생략)

보이는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제18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음.

[수정의견]

개 정 안	수 정 의 건
제55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제55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.
1. 제18조의9제2항 <u>후단</u>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요구를 따 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<u>후단</u>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 이 보완요구 또는 재조치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	1. ----- <u>후단(제18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)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후단(제18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)</u> ----- ----- -----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둘째,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계류중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하 “본회의 계류안”⁴⁾)에서도 과태료 근거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현행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제1호 및 제2호를 신설하는 개정을 한 바 있음.

4) 제439회국회(정기회) 제4차전체회의(2026. 9. 16.) 의결, 의안번호 2221409호

본회의 계류안의 제1호 및 제2호는 각각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인용하고 있는바, 제18조의9제2항을 인용하고 있는 동 개정안보다 최종적으로 앞선 순서로 조정되어야 할 것임. 이에 모든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동 개정안의 안 제5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임.

[제55조제1항 과태료 규정 비교]

현행	개정안 (본회의 계류안)	개정안 (DD21092)	전체시행(안)
1.제18조의13제2항 등	1.제13조의2제1항	1.제18조의9제2항 등	1.제13조의2제1항
2.제30조의2제2항	2.제13조의2제2항	2.제18조의13제2항 등	2.제13조의2제2항
	3.제18조의13제2항 등	3.제30조의2제2항	3.제18조의9제2항 등
	4.제30조의2제2항		4.제18조의13제2항 등
			5.제30조의2제2항

특히, 동일제명의 두 안건의 본회의 처리순서에 따라 개정문의 형태가 달라질 것임을 고려하여 별도의 수정안은 마련하지 않되, 추후 각 안건이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개정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.

[개정안 비교]

현행	개정안(본회의 계류안)	개정안(DD21092)
제55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＜신설＞	제55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1.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를	제55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1. 제18조의9제2항 후

	<u>획을 수립·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교육·점검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안전관리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</u>	<u>단(제18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정당 사유 없이 조치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후단(제18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정당 사유 없이 보완요구 또는 재조치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</u>
<u><신 설></u>	2. <u>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완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</u>	2. (현행 제1호와 같음)
1.·2. (생략)	3.·4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	3. (현행 제2호와 같음)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그 밖에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이 세 진)